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임헌경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5년 4월 13일

나. 회부일자 : 2015년 4월 14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장사무 규정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8조)

○ 행정부지사 →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나. 공동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15조)

○ 행정부지사 →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다. 과태료 징수절차 조문 삭제(안 제26조)

라. 기타 조문 정비 등(안 제1조, 제3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는 분장사무 규정 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